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37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1.>

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(폐지)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기관명			지정번호
위치			
설립·운영자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 :)		
수강생 현황	정원	현원	비고
정지기간 또는 폐지 연월일			
정지(폐지) 사유			
수강생 및 직원 조치			

「도로교통법」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우리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정지(폐지)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경찰청장 귀하

첨부서류	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(폐지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